■ 기사제목 성별·이름표기 모니터링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얼마나 고민하고 있나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 들어가며

2018년 10월, 연합뉴스는 “최근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맞춰 기사 내 성별 표기 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며,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남녀를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맥락상 성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녀 모두를 표기한다.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시 성별표시를 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개선안으로 발표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뉴스에서의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기사에서 ‘여전사’ ‘여왕’ ‘여장부’ 등 불필요하게 “여”자를 접두어로 사용하거나, 연합뉴스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만 별도로 성별을 표기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합뉴스의 발표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제목을 통한 성차별적 성별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2019년 2월 10일, 연합뉴스), 〈아내 폭행 60대, 야산서 한 달간 도피행각…실신 상태 발견〉(2019년 2월 15일, 연합뉴스),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2019년 6월 22일, 연합뉴스) 등이 그 예이다. 사례에서 드러나듯 피의자(가해자)[1]보다 피해자의 성별이 강조되고, 특히 여성일 경우 그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의 성차별적 성별표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모니터링 개요는 아래와 같다.

2.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대상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랭킹뉴스 중 많이 본 뉴스의 사회 섹션의 기사 제목 분석

·사건·사고의 피해자, 피의자(가해자) 등의 성별과 이름이 표기된 기사 제목 분석[2]

·2019년 포털의 온라인 뉴스 이용점유율 89%에 달하고 있으며,[3] 검색 포털 중 네이버의 점유율은 58%[4]임.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랭킹뉴스는 사회적으로 많이 유통된 뉴스를 볼 수 있는 지표

1) 사건·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상대어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의자, 용의자, 피고인 등이 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모두 표기하지 않고 피의자(가해자)로 표기하기로 정함.
2) 민·형사 상의 처벌과는 관계없이 기사 제목에서 표기되고 있는 방식대로 피해자, 피의자(가해자)를 구분함.
3) 출처: 〈'韓 블프' 시작되자 유통街, 상업용 실검 클릭戰 눈살〉(2019년 11월 4일, 아이뉴스24)

임. 이에 모니터링 대상을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랭킹뉴스로 설정함.

2)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랭킹뉴스에서 제공하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사)

3) 모니터링 도구

1) 날짜: 190101-190630 2) 분석 대상: 네이버-뉴스-랭킹뉴스-많이 본 뉴스(사회) 3) 순위: 해당 뉴스의 순위 입력[5)] 4) 기사제목 *사건·사고 관련 기사의 제목 중 이름 혹은 성별이 표기된 경우에만 입력 *피해·가해가 확인되는 사건·사고의 경우만 입력 5) 언론사명 6) 범죄유형(제목을 기준으로 2개까지 체크) ①살인·살인미수 ②강도·절도 ③강간·강간미수 ④성추행 ⑤성희롱 ⑥데이트폭력 ⑦디지털 성범죄 ⑧가정폭력 ⑨교통사고 ⑩폭행치사·폭행치상 ⑪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⑫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착취, '성접대' 등 ⑬기타(범죄유형 직접기록) 7) 피해자/피의자(가해자) 이름 표기: 해당 뉴스 제목에 이름이 포함된 경우 이름 입력 *다수인 경우 이름을 모두 입력 *이름을 적은 경우에도 성별 함께 입력 8) 피해자/피의자 성별 표기: 해당 뉴스 제목에 성별이 포함된 경우 입력 *직접 성별이 표기되지 않더라도 성별 추정가능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 체크

3. 모니터링 결과

1) 개요

① 모니터링 기사 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뉴스-랭킹뉴스-많이 본 뉴스 사회 섹션에 제공된 사건·사고 기사 중 기사제목에 성별이나 이름이 표기된 기사는 총 1,501건이었다.

---

4) 출처: 〈2019년 8월 검색포털 점유율 1위 네이버 58.82% , 2위 구글 33.28%〉(2019년 8월 20일, 파이트타임즈)

5) 기사 순위의 경우 매일 변동이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함.

② 성별표기 기사제목과 이름표기 기사제목 비교

총 1,501건의 기사 중 성별표기 기사제목은 505건(33.6%), 이름표기 기사제목은 996건(66.4%)이었다. 이름이 표기된 기사제목이 약 2배 많은데, 이는 모니터링 기간 중 고유정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름표기 기사제목에서는 남성 피의자(가해자) 이름이 가장 많이 표기되었고, 성별표기 기사제목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성별이 가장 많이 표기되었다.

③ 매체별 기사 수

JTBC(18건), KBS(25건), MBC(18건), MBN(2), SBS(79건), TV리포트(1건), TV조선(12건), YTN(43건), 경향신문(13건), 국민일보(205건), 노컷뉴스(21건), 뉴스1(82건), 뉴스엔(1건), 뉴시스(35건), 데일리안(1건), 동아일보(31건), 디지털타임즈(2건), 매일경제(2건), 머니S(4건), 머니투데이(51건), 문화일보(1건), 미디어오늘(3건), 서울경제(47건), 서울신문(28건), 세계일보(57건), 스포츠조선(1건), 시사저널(1건), 아시아경제(93건), 아이뉴스24(22건), 연합뉴스(179건), 연합뉴스TV(7건), 오마이뉴스(9건), 이데일리(49건), 전자신문(4건), 조선일보(53건), 조세일보(1건), 중앙SUNDAY(1건), 중앙일보(185건), 채널A(16건), 텐아시아(1건), 파이낸셜뉴스(13건), 프레시안(1건), 한겨레(20건), 한국경제(33건), 한국경제TV(4건), 한국일보(21건), 헤럴드경제(6건) (47개)

〈표1〉

기사제목에 성별과 이름이 표기된 것은 총 1,501건이고, 해당 기사는 47개의 매체에서 제공한 기사였다. 그 중 국민일보 205건(13.7%), 중앙일보 185건(12.3%), 연합뉴스 179건(11.9%) 순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④ 범죄 유형별 기사 수

범죄유형	기사 수
살인·살인미수	442건(26.0%)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착취, ‘성접대’ 등	233건(13.7%)
강간·강간미수	225건(13.3%)
폭행·폭행치사·폭행치상	166건(9.8%)
디지털 성범죄	156건(9.2%)
교통사고	140건(8.2%)
기타	102건(6.0%)
가정폭력	81건(4.8%)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68건(4.0%)
성추행	63건(3.7%)
성희롱	11건(0.7%)
데이트폭력	6건(0.3%)
강도·절도	5건(0.3%)
합계	1,698건[6](100.0%)

〈표2〉

6) 모니터링 대상 기사 수(1,501건)와 범죄유형별 기사 수(1,698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건의 기사에 2개까지 범죄유형을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임.

모니터링 대상 기사를 범죄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살인·살인미수 442건(26.0%)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접대', 성착취 등에 관한 기사가 233건(13.7%)을 차지했다. 살인·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사고 중에는 고유정 사건이 200여 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접대', 성착취 등은 '장학썬'[7] 관련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 이름표기 기사제목 분석결과

구분	기사 건수
피해자(여)	101건(10.1%)
피해자(남)	27건(2.7%)
피의자(여)	258건(25.9%)
피의자(남)	557건(55.9%)
피의자(여/남)	12건(1.2%)
피해자(여)-피의자(남)	24건(2.4%)
피해자(남)-피의자(여)	4건(0.4%)
피해자(남)-피의자(남)	13건(1.3%)
합계	996건(100.0%)

〈표3〉

피해자,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표기된 기사제목 중, 남성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557건으로 가장 많이 표기되었고, 그 다음으로 여성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258건 표기되었다.

사건·사고 기사제목에 표기된 이름 중 가장 많이 표기된 이름은 고유정 196건, 승리 141건, 정준영 109건, 김학의 74건, 한○○[8] 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유정 사건의 경우 여성 살인 피의자라는 점에서 언론과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승리, 정준영 관련 사건에 비해 고유정 사건이 포털 랭킹뉴스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씨의 사건의 경우 여성 배우의 사망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이름을 공개해야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과도하게 기사화되고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9]

	피해자 이름표기	가해자 이름표기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표기
조재범 성폭력 사건	8건	21건	4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1건	17건	3건

〈표4〉

위 〈표4〉와 같이 체육계 성폭력을 고발한 '심○○ 선수의 미투' 관련 기사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함께 표기된 기사 8건, 피해자의 이름만 표기된 기사 4건, 피의자(가해자)의 이름만 표기된 기사가 21건이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관련 기사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만 표기된 기사 1건,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함께 표기된 기사 3건, 피의자(가해자)의 이름만 표기된 기

7)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한 자씩 따 만든 신조어
8) 본고에서 사건·사고 피해자의 이름은 전체를 표기하지 않았음.
9) 관련 기사: 〈한○○ 교통사고, 사망 확인 전부터 실명 어뷰징〉(2019년 5월 10일, 미디어오늘)

사가 17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표기된 기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사건 모두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8년 이후 한국의 #미투운동 국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 성폭력을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함께 공개됐다.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사건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고은 성폭력 사건 등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명명되었다.[10] 따라서 두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름보다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이 더 많이 표기된 것이다.

반면에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 〈"도박 중독에 화나서" 여성 동업자 성폭행 후 방화 살해 50대 항소〉(2019년 1월 27일, 뉴시스), 〈중학동창 초등학생 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확정〉(2019년 3월 31일, 머니투데이), 〈숨진 채 발견된 예비 신부…용의자는 '약혼자 후배'〉(2019년 5월 17일, SBS) 등 대부분의 기사에서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만 표기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박○○ 남편', '마○○○○ 부모'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가족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승리, 성접대 지시 의혹…박○○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충격'〉(2019년 2월 26일, 한국경제), 〈마○○○○ 부모 "애들 앞길 망쳐 죽고 싶다"…피해자가 전한 근황〉(2019년 2월 20일, 중앙일보)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식당에서 상습 성폭행" 직원에게 피소된 유명 걸그룹 셰프 父〉(2019년 1월 11일, 국민일보)처럼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도 사용되었다. 사건의 직접 관계자가 아님에도 이름 등을 기사제목에 노출시키는 것은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성별표기 기사제목 분석결과

구분	기사 건수	
피해자(여)	201건(39.8%)	261건 (51.7%)
피해자(남)	33건(6.5%)	
피해자(여/남)	27건(5.3%)	
피의자(여)	20건(4.0%)	67건 (13.3%)
피의자(남)	32건(6.3%)	
피의자(여/남)	15건(3.0%)	
피해자(여)-피의자(여)	36건(7.1%)	177건 (35.0%)
피해자(여)-피의자(남)	70건(13.9%)	
피해자(여)-피의자(여/남)	23건(4.6%)	
피해자(남)-피의자(여)	23건(4.6%)	
피해자(남)-피의자(남)	12건(2.4%)	
피해자(남)-피의자(여/남)	6건(1.2%)	

10) 성폭력 사건은 과거에 대부분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명명되었음. 이후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게 되었음. 예를 들어 서울대 신교수 사건, 조두순 사건 등이 있음. 하지만 가해자의 이름으로만 성폭력 사건을 명명하는 것 또한 가장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피해자(여/남)-피의자(여)	2건(0.4%)	
피해자(여/남)-피의자(남)	5건(1.0%)	
합계	505건	

〈표5〉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된 기사제목은 261건(51.7%), 피의자(가해자)의 성별만 표기된 기사제목은 67건(13.3%)으로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된 기사제목이 약 4배 정도 많았다.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의 성별을 함께 표기한 기사는 177건(35.0%)이다. 사건·사고 기사제목에서 피의자(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성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사고 관련 기사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범죄행위만을 기본적인 사실로 다룬다. 특히 피해자의 견해나 정신적인 피해 등을 모두 배제된 채 단지 경찰조서에만 의존해서 쓰는 보도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게 된다.[11] 이러한 취재 관습이 기사제목에도 반영되어 피해자가 강조되는 방식의 기사제목이 작성되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 구분 없이 성별로만 분석해 보면,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제목은 221건, 남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제목은 65건이다.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제목이 3.4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은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제목의 사례이다.

〈"죽어서라도 복수"…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결국 '징역형'〉(2019년 1월 7일, 뉴스1)
〈“죽었으면 버려” 여고생 집단 성폭행 후 의문의 문자?… 끝내 숨져〉(2019년 2월 20일, 국민일보)
〈프로포폴 꽂힌 채 숨진 20대 여성 발견…동거인 의사 구속영장〉(2019년 4월 19일, 서울신문)
〈“유산돼라, 이혼하게ㅋㅋ” 죽어서도 이혼 못 한 언니(인터뷰)〉(2019년 5월 23일, 국민일보)
〈“채팅앱으로 만난 女, 모멸감 느끼게 해” 오산 모텔 살인사건 전말〉(2019년 6월 4일, 국민일보)

〈표6〉

해당 뉴스들은 많이 본 뉴스의 30위권 안에 포함되는 기사이다. 조회수가 높은 기사라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피해 상태를 드러내거나 가해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에 제공되는 수많은 기사 중에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제목을 뽑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대목이나 충격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처럼 기사의 선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여성 피해자를 부각하는 기사제목은 여성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가부장주의적이고 선정적인 여성묘사를 반복하는 견고한 프레임을 형성하게 된다.[12]

여성의 성별만 표기된 기사제목 221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01건이다. 이 중 피의자(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기사제목은 117건, 피의자(가해자)가 드러나는 기사제목은 84건이다. 아래 〈표7〉에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1)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63-92.
12) 상동

〈“벗고 있어 가려준 것” 女직원 ‘신체 접촉’ 영상에 외교관 해명〉(2019년 1월 12일, 국민일보)
〈찜질방 女손님들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징역 3년〉(2019년 1월 20일, 뉴스1)
〈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2019년 2월 10일, 연합뉴스)
〈중학동창 초등학생 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확정〉(2019년 3월 31일, 머니투데이)
〈“성추행 문제로 말다툼”…중학생 의붓딸 살해한 30대 긴급체포〉(2019년 4월 29일, KBS)
〈숨진 채 발견된 예비 신부…용의자는 '약혼자 후배'〉(2019년 5월 28일, SBS)
〈강남서 경찰관, 조사대상 여성과 부적절 성관계〉(2019년 6월 20일, 서울신문)
〈또 '혼자 사는 女 집' 침입 시도 30대.. '강간미수 적용 검토'〉(2019년 6월 23일, 이데일리)

〈표7〉

해당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기사의 본문에는 피의자(가해자)의 성별도 함께 표기되었다. 그럼에도 기사제목에 女직원, 女손님, 여성 택시기사, 딸, 신부 등 피해자의 성별만을 표기한 것은, 기사제목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여성을 ‘예외’ 남성을 ‘보편’」으로 간주하는 언론의 성차별적 관행과 더불어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소비하는 문화,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임을 가리는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최지은[13]은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인 남성의 성별은 표기되지 않는다. 남성을 인간의 기본값으로 두고 ‘여성’을 변수로 놓는 것은 차별적이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헤드라인마다 남성을 지우고 ‘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기사제목에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정보를 드러내고, 어떤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지는 언론사의 선택의 문제이다. 기사제목의 성별표기 관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4) 연합뉴스의 사건·사고 관련 기사 제목표기 방식

연합뉴스의 경우, 기사 내 성별표기 방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제목을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연합뉴스 기사 179건 중 기사제목에 성별이 표기된 것은 63건이었다. 그 중 여성 피해자의 성별만을 표기한 기사가 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분	연합뉴스 기사 건수		전체 기사 건수	
피해자(여)	19건(30.2%)	37건 (58.7%)	201건(39.8%)	261건 (51.7%)
피해자(남)	7건(11.1%)		33건(6.5%)	
피해자(여/남)	11건(17.5%)		27건(5.3%)	
피의자(여)	5건(7.9%)	8건 (12.7%)	20건(4.0%)	67건 (13.3%)
피의자(남)	2건(3.2%)		32건(6.3%)	
피의자(여/남)	1건(1.6%)		15건(30.%)	

13) 최지은 (2017). 괜찮지 않습니다. 알에이치코리아, 76.

피해자(여)-피의자(여)	5건(7.9%)	18건 (28.6%)	36건(7.1%)	177건 (35.0%)
피해자(여)-피의자(남)	5건(7.9%)		70건(13.9%)	
피해자(여)-피의자(여/남)	4건(6.3%)		23건(4.6%)	
피해자(남)-피의자(여)	2건(3.2%)		23건(4.6%)	
피해자(남)-피의자(남)	1건(1.6%)		12건(2.4%)	
피해자(남)-피의자(여/남)	0건		6건(1.2%)	
피해자(여/남)-피의자(여)	0건		2건(0.4%)	
피해자(여/남)-피의자(남)	1건(1.6%		5건(1.0%)	
합계	63건		505건	

〈표8〉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는 37건으로 피의자(가해자)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8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한 피해자, 피의자(가해자)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는 24건으로 남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9건)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전체 성별표기 기사제목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연합뉴스와 모니터링 대상 전체 기사를 비교해보면 피해자 여성을 특정한 비율은 낮고(연합뉴스 30.2%〈전체기사 39.8%),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한 비율은 높고(연합뉴스 58.7%〉전체기사 51.7%),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를 함께 표기한 비율은 낮다(연합뉴스 28.6%〈전체뉴스 35.0%)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를 표기한 비율이 전체 기사에 비해 낮은 것은 언론사의 개선 노력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자 성별 표기 비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를 함께 표기한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연합뉴스의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서 구매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의 기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성차별적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래 〈표9〉는 여성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한 사례 중 일부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연합뉴스의 문제의식과 개선안이 기사제목에도 반영되길 바란다.

〈공기계 휴대전화 숨겼다고…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마구 폭행〉(2019년 1월 18일, 연합뉴스)
〈동탄 여성살해 · 도주 용의자 공개수배…보상금 500만원(종합)〉(2019년 1월 19일, 연합뉴스)
〈만취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후 도주〉(2019년 2월 10일, 연합뉴스)
〈오산 모텔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15시간만에 검거(종합)〉(2019년 6월 3일, 연합뉴스)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2019년 6월 23일, 연합뉴스)

〈표9〉

5)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성별표기 방식

동일한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성별과 이름표기 방식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래의 〈표

10〉의 사례를 살펴보면 6월 22일 중앙일보, 경향신문, SBS의 기사 제목에는 성별과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은 반면, 6월 22일 채널A, 이데일리는 피해자와 피의자(가해자)의 성별을 모두 표기했고, 6월 23일 중앙일보는 피의자(가해자)의 이름을 표기했다.

〈유명 피트니스 모델, 클럽 앞서 행인 폭행해 체포〉 (2019년 6월 22일, 경향신문)
〈만취 피트니스 모델, 강남클럽 앞서 행인 목 깨물어 출혈까지〉 (2019년 6월 22일, 중앙일보)
〈유명 피트니스 모델, 클럽 앞에서 행인 폭행해 체포〉(2019년 6월 22일, SBS)
〈담배 요구하다…'만취' 피트니스 女 모델, 남성 2명 폭행〉(2019년 6월 22일, 채널A)
〈女 피트니스 모델, 남성 폭행 '목 물어 피 흘러'〉(2019년 6월 22일, 이데일리)
〈목 깨물고 뺨 때리고…피트니스 모델 류○○[14] 만취 난동 보니〉(2019년 6월 23일, 중앙일보)

〈표10〉

결과적으로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일부 언론의 상업주의로 인해 피해자, 피의자의 이름이나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언론의 표기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기사제목의 성별, 이름이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름표기 기사제목은 996건이었고, 이 중 557건(55.9%)가 남성 피의자(가해자) 이름을 표기했음.
·이름표기 기사제목 중 가장 많이 표기된 이름은 '고유정'이었음.
·성별표기 기사제목은 505건이었고, 이 중 201건(39.8%)이 여성 피해자의 성별을 표기했음.
·성별표기 기사제목 중 261건(51.7%)이 피해자의 성별만 표기했음.
·성별표기 기사제목 중 여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는 221건(43.8%), 남성의 성별만 표기한 기사는 65건(12.9%)이었음.
·성별표기 기사제목은 피의자(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성별을 드러냈고, 남성보다 여성의 성별을 드러냈음.

모니터링 결과 여성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의자(가해자)인 경우에도 기사제목을 통해 성별과 이름이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사제목의 성차별성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째,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해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성별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기사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여성의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강화한다. 그러나 〈"성추행 때문에 여성 노숙인 다 숨어버

14) 류○○의 경우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해자)이지만 실명이 공개된 것이 과도하게 피의자의 신상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어 이름을 전부 표기하지 않았음.

려” 기댈 곳 없는 그들〉(2019년 3월 2일, 아시아경제)와 같은 기사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없다.

둘 째,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호명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여대생 살해 후 차 밑에 유기한 20대 구속〉(2019년 4월 21일, 뉴스1)에서 피해자를 ‘여대생’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정성을 노린 단어 사용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 발견된 여중생 임신 4개월…‘성폭행 피해 주장’〉(2019년 2월 11일, 국민일보), 〈[Pick] 동창 9살 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2년〉(2019년 3월 31일, SBS) 등에서도 여중생, 9살 딸이라는 단어는 사건의 잔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누가 피해자인지’를 강조하며 사건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셋 째, 성차별적 단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여교사, 여검사처럼 기사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전문직 여성들을 지칭할 때 ‘여○○’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남자와 성관계 동영상 봤어" 내연녀 살해 40대 중형〉(2019년 2월 13일, 뉴스1),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의사 영장심사…묵묵부답〉(2019년 4월 20일, SBS)에서는 내연녀, 동거녀 등의 단어를 사용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연녀, 동거녀라는 점이 강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사용은 불필요하다.

넷 째, 기사제목의 이름표기에 대해서도 특정 성별의 이름이 유독 많이 쓰이는 경향이 없는지 언론 스스로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특히 공인, 유명인이 아닌 경우의 이름표기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올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15]에 따라 고유정, 안인득, 장대호 등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 중, 고유정이 여성 살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유독 이 사건을 주목하고, 너무 많은 기사가 생산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보고서에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언론사들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 또한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SNS에서는 2015년부터 ‘#뉴스기사_남성성별_표기운동’ 해시태그 액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성차별적 성별표기 기사제목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이다. 우리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성평등의 흐름에 놓여있고, 한국의 언론 또한 이 흐름에 따라 성차별적 관행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15)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비판할 점은 많지만 본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두었음.